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8가단514094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송제경, 이지영, 조주태

변론 종결 2019. 11. 12.

판결 선고 2020. 1.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8,152,694원 및 그 중 186,466,625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5. 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8.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18. 3. 6. 접수 제12577호로 마친 1번A지분전부, 3번A지분전부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6. 25. 서울 송파구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받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70,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3. 6. 2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반복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여 왔는데, 최종적인 보증조건은 "보증금액 189,550,000원, 보증채무최고액 246,415,000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8. 6. 15.까지"로 정하여졌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 등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7. 4.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3. 4.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은행이 2018. 3. 12. 신용보증 사고통지를 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6. 15.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금으로 186,466,62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686,069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소유인 각 1/2지분에 대하여 2018. 2. 20. 피고 B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합계 451,47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3.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12577호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채무금 188,152,69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86,466,6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5. 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A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및 피고 A의 사해의사 앞서 든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1/2 소유 지분이 유일한 사실, ② 피고 A은 운영하던 약국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8. 2. 20.경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A의 선대가 보유하였다가 피고 A 등 4형제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1/4 지분씩 재산상속을 한 것인데, 피고 B의 부친이자 피고 A의 형인 소외 E 소유의 각 1/4 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자 피고 A이 이를 경락받음으로써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E 명의의 각 1/4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또한 앞서 본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A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2) 피고 B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드러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피고 A 소유지분에 관하여 경료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상근

별지